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 6. 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개정안은 2022.6.10. 유영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6.10.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임(의안번호 : 2756호).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한 양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변경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의장은 의원이 겸직을 할 경우 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

라. 징계 기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함.

마.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를 별지1호 서식 같이 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를 별지2호 서식 같이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2015년 10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권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이 법에서 제한한 직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나.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신설하여 의원은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의 신고 의무와 그 신고 서식을 별지 서식 제1호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3조(회의출석의무)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의회 출석 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 범위와 방식은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4조(겸직금지 및 신고)에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겸직 사항 신고 서식을 별지 서식 제2호로 하며,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직을 겸하는 경우 의장이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원이 겸직 신고를 하면 이를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7조(징계)를 신설하여 의원이 겸직이나 수의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규정에 위반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을 별표로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에 따라 강화된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사임 권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5년 권익위에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라 ‘징계기준’을 별표로 신설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설하고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따르고 있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따르고 있어 적법한 개정안이라 보고 드립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